

의안번호	2203150
의 퇴 인	김성원 의원
회 답 일	2024.10.28.
추계번호	24D286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4조의2 (교육에 대한 지원)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설치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1)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 교육부장관은 접경지역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음(제3항) - 대학입시제도 중 정원의 특별전형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제4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대상·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4조의2 (교육에 대한 지원) 신설	수업료 지원 (제2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특별지 원(제3항)	미대상
		접경지역 특별 전형 신설(제4 항)	미대상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2. 상세 사유

□ 접경지역의 교육비 등의 특별지원(안 제24조의2 신설)

- 개정안은 서해 5도²⁾와 마찬가지로 접경지역³⁾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안 제24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비의 지원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지원 규모 등을 예측하기 곤란함
 - － 서해 5도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였으나, 고등학교 교육의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2021년부터는 지원하지 않음
- 안 제24조의2제3항은 특별교부금의 배분에 관련된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특별교부금의 총액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
- 안 제24조의2제4항은 대학입시제도 중 정원의 특별전형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하려는 것이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각 대학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접경지역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증가하여도 이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2011년 시행된 서해 5도 특별전형은 다른 특별전형과는 다르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2010년 11월에 일어난 연평도 포격전 이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서해 5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정이 이루어짐

3) 현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